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30일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4월 15일

나. 제안자: 홍재희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4.4.30.)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홍재희 의원)

□ 제안이유

○ 차도, 보도 및 보행자길에 설치된 전신주가 보행약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구청장의 보행여건 개선 의무에 전신주 이설 요청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강서구의 부담으로 통행불편 전신주를 우선 이설한 경우 이설 원인 제공자에게 이설 비용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라 통행불편 전신주 규정(안 제2조제5호)
- 나. 구청장의 보행여건 개선 의무에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및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7조제4호)
- 다. 강서구의 예산으로 통행불편 전신주를 우선 이설한 경우 상위법령에 따른 원인 제공자에게 이설 비용 청구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 라. 사소한 표현 및 띠어쓰기 수정(안 제2조제3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 나. 협조부서: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 다. 입법예고(2024. 4. 23. ~ 4. 29.)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보도 등에 설치된 전신주가 보행약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구청장의 보행여건 개선 의무에 전신주 이설을 추가하고, 통행불편 전신주로 보행여건 개선이 필요하여 구가 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이설 비용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

- 통행불편 전신주 규정(안 제2조제5호)
- 통행불편 전신주의 이설 요청 또는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정(안 제7조제4호)
 - 전신주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구청장이 그 설비의 이설 요청 또는 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을 신설
-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비용의 청구(안 제7조의2)
 - 통행불편 전신주에 대해 강서구가 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경우, 상위법령¹⁾에 의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통행불편 전신주의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은 개정조례 시행 후로 규정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통행불편 전신주에 대한 이설 요청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원인 제공자에게 이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전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청에서 직접 통행불편 전신주를 이설 후, 원인 제공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사료됨.

1)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으로 세부내용 ‘붙임’ 참조

- 특히 부칙(제2조)을 통해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 시행 후 원인 제공자에게 적용하게 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음.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안 제7조의2(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비용의 청구)의 이설 비용청구는 임의규정이지만 원인 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용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 이설부지 선정에도 주민 협의 및 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자치구 관련 사업 2024년 예산 편성 현황 -

연번	자치구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1	은평구	생활불편 지장전주 정비사업	74,000
2	서대문구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90,000
3	관악구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202,600
4	동작구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	300,000
5	서초구	지상시설물 이설 및 관리	375,000
6	광진구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 관리(306,700) 광진구 관내 통행 불편 한전주 이설(100,000)-주민참여예산	406,700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 등 각 1부.

붙임1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제4호(통행불편 전신주의 이설 요청 또는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를 강행규정에서 ②항을 신설하여 임의규정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함.
 - 부서(교통행정과)에서는 전신주 이설은 법령이나 기술적으로 구청장이 주관할 수 없고 이설코자 하여도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구청장의 의무화가 어려워 임의규정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개정조례안은 전신주의 이설이 아닌 요청(한전 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²⁾이며, 이설 요청하여도 이설이 불가능한 경우, 이설 대상이 불승인 되어 종료됨.
- 안 제7조의2(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비용의 청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함.
 - 부서(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건축허가 시 구청 승인부서가 전신주 이설 등에 대해 건축허가 조건을 제시하고, 준공 시 전신주 이설을 확인 후 준공처리하고 있어 비용청구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하였으나
⇒ 전신주 이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하여 준공된 경우, 본 개정조례안에 의거 원인 제공자에게 이설 비용청구가 발생하지 않고
⇒ 사용승인 시 ‘전신주 이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반드시 건축허가 조건의 필수사항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사용승인 후 건축허가 조건에 누락된 통행불편 전신주가 있을 경우(민원 등)에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있다고 사료됨.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